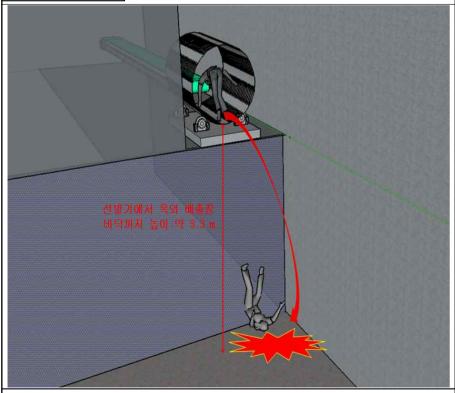
선별기 점검증 떨어짐

재 해 개 요

'18년 9월 000(주)의 소속 근로자가 작업준비를 위해서 **선별기**(현장용어: 통돌이)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내부에 들어갔으나, 이를 인지하지 못한 동료작업자가 선별기를 가동시켜 중심을 잃고 약 3.3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* 재활용쓰레기에서 비닐류를 선별하는 원통형 회전체

재해상황도



< 재해발생 상황도 >

재해발생상황

- 점심식사 후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들(10명)이 재활용쓰레기에서 캔 등을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2층 작업장으로 이동
- 피재자가 선별기 내부로 들어감.
- 옥외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동료작업자(A)는 선별기 내부에 피재자의 신체 일부(발)를 발견하고, 위험상황을 알리려고 1층 작업장 내부로 들어갔으나,
- 이미 동료작업자(B)는 선별기 가동을 위해서 선별기 전원을 켰다고 함.
- 피재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동료작업자(B)는 곧바로 선별기의 전원스위치를 조작하여 설비를 중지하였으나, 선별기 안에서 함께 회전하던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상실하고 높이 3.3m 아래의 옥외 배출장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짐.

재해발생 원인

○ 청소 작업시의 방호 조치 미실시

- 청소 작업 등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근로자가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별기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함.

○ 운전 시작 시 작업방법 확인 등의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

- 선별기 운전 시작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교육 및 작업방법,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, 위험방지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음

○ 추락 위험 장소의 출입 금지 미실시

-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나 미실시함

○ 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

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, 안전모 미지급 및 미착용함

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청소 작업시의 방호 조치 실시

- 청소 작업 등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근로자가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별기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게 하거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호 조치 실시

○ 운전 시작 전 작업방법 확인 등의 위험방지 조치 실시

- 기계 운전 시작시 근로자가 추락 등의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교육 및 작업방법,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, 위험방지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

○ 추락 위험 장소의 출입 금지 조치 실시

-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조치 실시

○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조치

-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

【권고사항】

○ 컨베이어, 선별기에 비상정지장치 설치

- 컨베이어 및 선별기 운전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가 설치
- 추가로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 인근에 있는 근로자가 청각.시각적으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음이 내장된 경광등 설치

○ 안전보건표지 설치

- 작업장 주위에 위험장소 경고표지, 안전모 착용 지시표지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·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

○ 작업순서 등의 안전 작업수칙 제정

- 근로자에게 설비 작동 순서, 운전 가동 및 중지 방법, 설비 방호장치 및 이물질 제거 방법 등이 포함된 안전 작업수칙을 제정하여 근로자 교육 실시 및 현장에 부착